



20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대표이사 메시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SK 실트론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상시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시장과 고객이 신뢰하는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SK 실트론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구축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와 동반성장 구현에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시장 환경은 최근 ESG 경영의 대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요구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SK 실트론도 윤리경영 실천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SK 실트론은 기존의 법규 준수 문화의 틀을 넘어 우리 스스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에서 모든 임직원의 뜻을 모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다시 한 번 공정거래에 관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SK 실트론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윤리경영, 공정거래 모범 실천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사회와 고객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우리의 첨단 기술 수준에 상응하는 회사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CEO로서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1. 공정거래의 자율적 실천이 SK 실트론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2.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거나 유용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의 지시, 승인, 방조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SK 실트론의 공정거래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조속히 정착·확립되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년 8 월 10 일
SK 실트론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용호

목차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해	5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5
1) 의의	5
2) CP의 필요성	5
3) CP규정에 따른 8대 도입요건	5
나. CP 등급 평가제도	7
제2절 공정거래법 실무	8
가.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8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8
2) 위법성 판단기준	8
3) 위반시 제재	8
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8
1) 부당한 거래거절	9
2) 차별적 취급	11
3) 경쟁사업자 배제	15
4) 부당한 고객유인	18
5) 거래강제	19
6) 거래상 지위남용	20
7) 구속조건부거래	23
8) 사업활동 방해	24
다. 부당한 지원행위	25
1) 부당한 지원행위 정의	25
2) 부당한 자금지원	28
3) 부당한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 지원	29
4) 부당한 부동산 임대차 지원	31
5) 부당한 상품·용역거래	32
6) 부당한 인력지원	34
7)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36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38
1)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38
2) 대상행위	38
3) 법 위반시 제재조치	42
마. 부당한 공동행위	43
1) 대상행위	43
2) 면책 및 보상제도	44
제3절 하도급법 실무	45
가. '하도급법'의 목적과 특성	45
1) 목적	45
2) 특성	45
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대상	46
1) 법 적용 대상	46
다.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48
1) 서면 발급 및 보존(제3조)	48
2) 선급금 지급의무(제6조)	50
3)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제7조)	51
4)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제9조)	52
5)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제13조)	54
6)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제15조)	56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제16조)	57
8)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제16조의2)	58
라.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60
1)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60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제4조)	62
3)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제11조)	64
4)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금지(제8조)	65
5) 부당반품 금지(제10조)	67
6)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제12조의3)	68
7)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제5조)	69
8)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제12조)	70
9)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2조의2)	71

10)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제17조).....	72
11)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제18조).....	73
12)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	75
13) 탈법행위의 금지(제20조)	76
마. 발주자의 의무사항	77
1)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77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	79
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79
1) 조문내용	79
2) 적용 대상	79
나.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86
1) 조문내용	86
2) 공시대상 회사	86
3)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87
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92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해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1) 의의

CP를 통해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 CP의 필요성

① 기업의 법위반 손실 방지 및 이미지 제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 제재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CP를 주축으로 한 준법경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P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의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그에 따른 제재로 인한 과징금, 소송비용, 손해배상 등 금전적인 부담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제재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문화의 공표를 통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CP를 운영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조성되면 기업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고 기업과 협력하는 Business Partner에게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조성의 필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협력업체들과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3) CP규정에 따른 8대 도입요건

①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2년 6월에 CP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②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당사 CEO는 22년 8월에 전사 공지 및 사내 방송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선언하였습니다.

③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자율준수관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영관리실장

④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본 자율준수편람이 당사의 자율준수편람으로 활용됩니다.

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매년 1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주무부서인 법무팀 주도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⑥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SK그룹의 윤리경영제보 Site와 연동하여 공정거래 위반 관련 제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으며

Compliance 진단을 통해 위험 요소들을 발견, 개선하고 있습니다.

⑦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사규 상에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실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⑧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CP운영기준 및 자율준수편람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나. CP 등급 평가제도

- CP등급평가는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 당사는 현재 등급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등급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2절 공정거래법 실무

가.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01	거래거절
02	차별적취급
03	경쟁사업자 배제
04	부당한 고객유인
05	거래강제
06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07	구속조건부 거래
08	사업활동 방해
09	부당한 지원

2) 위법성 판단기준

- 위법성의 핵심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공정거래 저해성에 있으며 이는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3) 위반시 제재

구분	과징금	벌칙	비고
거래거절 ~ 사업활동 방해	관련 매출액의 4% 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 이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동시적용 가능
부당지원 (특수관계인 포함)	관련 매출액의 10% 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 이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1) 부당한 거래거절

- 원칙적으로는 누구와 거래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진다면 거래거절에 해당합니다.
- 거래거절은 ① 공동의 거래거절과 ②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성됩니다.
- 회사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중단,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 계속의 거절 등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봄
- 그러나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함

② 기타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중단,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 계속의 거절 등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거래거절 물품, 용역이 거래 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2) 차별적 취급

-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 및 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 법 위반입니다.
- 차별적 취급은 ① 가격차별, ② 거래조건차별,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④ 집단적 차별로 구성됩니다.

①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상 행위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

※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며, 여기에는 할인을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 가격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가격차별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음

▶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인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가격차별 대상인 거래상대방이 거래선을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가격차별 정도가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음

-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 당해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격할인을 받는 사업자의 이익, 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가격차별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거래조건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상 행위

-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 ※ 가격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수량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을 말함

- 거래조건 차별은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차별대상 사업자가 엄격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봄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조건 차별이 당해 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및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가격차별에 준하여 판단함.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상 행위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
- 차별의 대상에는 소비자도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
- 그러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하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음.

-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④ 집단적 차별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상 행위

-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차별취급이 대상이 됨. 부당한 공동행위와 달리 집단적 차별취급은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차별취급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음. 또한 실제로 차별행위가 행해져야 함.
- 차별취급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도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 집단적 차별행위의 위법성은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함.
- 다만,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비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봄.

3) 경쟁사업자 배제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경쟁사업자 배제는 ① 부당염매, ② 부당고가매입으로 구성됩니다.

① 부당염매

- 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당염매에는 계속적 염매와 일시적 염매가 있습니다.

○ 대상 행위

- 계속적 염매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함.
※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 여부는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함.
- 일시적 염매란 일회 또는 단기간(1주일 이내)에 걸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함. 현저히 낮은 대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 염매와 같음.

○ 위법성 판단기준

- 염매행위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란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고 실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계속적 염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 그러나, 계속적 염매를 한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하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당해 시장에 진입장벽(예: 규모의 경제, 사업영위 인허가, 거래비용 등)이 없어 계속적 염매로 인해 현재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될 수 있는 경우
 -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염매로 판매하는 경우
 -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 계속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계속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일시적 염매의 경우,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가 되는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②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상 행위

-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통상 거래가격이라 함은 당시의 시장에서 사업자 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말함.
- 인위적으로 제품이나 원재료의 품귀를 발생시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점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물량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므로, 고가매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 위법성 판단기준

- 고가매입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품귀를 가져옴으로써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고가매입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원활한지 여부와 다른 대체재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대체재가 존재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을 수 있음
 - 고가매입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 고가매입의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4) 부당한 고객유인

-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당한 고객유인은 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②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③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구성됩니다.

5) 거래강제

- 사업자가 끼워팔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회사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거래강제는 ① 끼워팔기, ② 사원판매, ③ 기타의 거래강제로 구성됩니다.

6) 거래상 지위남용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됩니다.
- 거래상 지위남용은 ① 구입강제, ② 이익제공 강요, ③ 판매목표 강제, ④ 불이익제공, ⑤ 경영간섭으로 구성됩니다.
- 거래상 지위 여부

▶ 거래상 지위 여부

-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함
-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예시) 본사와 협력업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①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이익제공 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회사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계열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됨. 이익제공 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됨.
- (예시)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③ 판매목표 강제

- 회사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④ 불이익제공

-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함.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됨.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음.

- (예시) 사업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예시)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⑤ 경영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관련 사례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2021소심2493]
[사실관계] 쿠팡(주)는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음
[공정위 의견] 쿠팡(주)의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7)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 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에 위반됩니다.
- 구속조건부거래는 ① 배타조건부거래, 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으로 구성됩니다.

① 배타조건부 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상 행위

-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함.
-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함. 따라서 독점판매계약도 해당되며, 경쟁사업자와의 기존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규거래 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됨.
- 배타조건의 형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 배타조건부거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사업활동 방해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업활동 방해는 ① 기술의 부당이용, ②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③ 거래처 이전 방해, ④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로 구성됩니다.

①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거래처 이전 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④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및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시)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다. 부당한 지원행위

1) 부당한 지원행위 정의

- ①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와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지원주체와 객체

- 지원주체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를 말하고 지원객체는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말함

○ 부당성 판단기준

-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이 해당
지원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원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 이내의
사업자가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예시)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예시)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상 계열증권사의 회사채인수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주간회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하인수회사가 되어 수수료를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증권회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부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예시)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예시)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인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리하여 설립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예시) 소요부품을 자체 생산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선을 잠식하지 않는 경우

(예시) 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회사에 공급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가 기존거래선과의 공급관계만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

(예시)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예:70%이상)을 수출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회사가 제품의 대부분을 계속하여 수출하는 경우

▶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연구기술인력 활용 및 분사 후 분할된 자산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서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을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2) 부당한 자금지원

- ①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자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②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실제적용금리가 해당 자금거래와 식,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개별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함.
- (예시)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하는 경우
- (예시) 지원객체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 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경우
- 관련 사례

(주)웅진씽크빅 등 6개사의 부당지원행위 [2011서감2312]	
[사실관계]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21억원을 차입하는데에 원고웅진홀딩스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예금 600억원과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 자금지원이 있었음
[공정위 의견]	법원은 피고(공정위)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 또는 웅진폴리실리콘과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 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3) 부당한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함.

▶ 정상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함

- ①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함
 - ②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함
 -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함
- (예시) **[주식 고가매입]**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 (예시) **[주식 우회인수]** 금융관련 법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 (예시)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게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 관련 사례

삼성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 [2018내부2188]	
[사실관계]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지급, 물가/임금인상을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공정위 의견]	약 9년간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웰스토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웰스토리는 내부거래를 통해 취득한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함. 또한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발판으로 단체 급식 경쟁 입찰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립 급식업체의 생존을 위협했고, 지원행위에 의해 웰스토리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 강화됨으로써 웰스토리의 경쟁여건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제고되었다고 판단함.

4) 부당한 부동산 임대차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 ② 부동산을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정상 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로 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함.

- 해당기간의 정상임대료 = (부동산 정상가격의 50/100)*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

- 임대료 = 해당기간의 임대보증금*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

- (예시) **[부동산 저가임대]**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 (예시) **[부동산 고가임차]**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관련 사례

(주)신한은행의 부당지원행위 [2005조기4245]
[사실관계] 피심인은 계열사인 신한캐피탈 및 신한생명(이하 '지원객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정상적인 평당 임대료는 최소한 84,370원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이보다 현저히 낮은 70,250원으로 결정하였음.
[공정위 의견]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여신전문금융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던 "지원객체"는 경영개선이 되어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시장과 생명보험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되고 경제력 집중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하게 다른 회사를 지원한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5) 부당한 상품·용역거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용역을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②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 대상행위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위 지원행위 중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상품·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함.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2) 부당한 자산거래의 해당내용을 준용함.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에 있어 지원주체 또는 지원객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를 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계열회사1(지원주체)-계열회사2(지원객체)-계열회사3의 거래구조에서는 계열회사1 또는 계열회사1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경우에 계열회사1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2를 배제한 채 계열회사3과 직거래를 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

○ 예시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앞선해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와의 상품·용역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와 비계열회사 간 거래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품·용역의 내용·품질 등 거래조건이 유사함에도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②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 대상행위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와 상품·용역 거래를 하면서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 시 고려사항

-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 예시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6) 부당한 인력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①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②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 양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

양자에 대한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의 금액에서 해당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함.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함. 다만, 인력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음.

- (예시)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예시)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우
- (예시)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예시) 지원주체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 관련 사례

삼양식품(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2015제감0797]

[사실관계]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라□□ 등 자신의 직원 11명에게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음. 피심인 삼양식품은 자신의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음. 삼양식품 소속인 이□□는 2007. 5. 31.부터 2011. 3. 28.까지, 그리고 박□□은 2011. 3. 29.부터 2015.3.31.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음.

[공정위 의견]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를 지원하였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므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7)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 ①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② 또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 시 고려사항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분석·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 ㉢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방식인지 여부
- ㉣ 지원주체가 역할이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지원객체를 거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
- (예시)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 과징금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10% 범위 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법위반관련 매출액=청상가격과의 차이를 의미함

㉢ 형사적 제재

- 부당지원행위를 한 지원주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의 형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에 과함

- 관련 사례

롯데피에스넷(주)의 부당지원행위 [2012서감1294]
[사실관계]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 9.부터 2012. 7. 현재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구)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하였음.
[공정위 의견] 피심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고 판단함.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공정거래법 제47조, 시행령 제54조

1)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 지원주체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총수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원객체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
-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

2) 대상행위

○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 등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적용제외 기준

정상가 대비 7% 미만 + 해당연도 거래총액 50억(상품용역 200억) 미만인 거래 제외

거래총액은 매출액 뿐만 아니라 매입액까지 포함

■ 정상가격

유사사례 등을 통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형성될 시가를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쳐 추단하되, 유사사례가 없으면 세법 등 준용

▶ **정상가격 추단방법**

- 당해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함
-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당해 이익제공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함.
- 유사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함
- 이 경우 자산·상품·용역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

■ **관련 사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2016제감3225]
[사실관계]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들은 직접 또는 기내식 공급업체 등 협력업체를 매개로 □□고속(총수일가 지분율 51%)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함.
[공정위 의견] 유사 시기의 금융기관 제공가능 금리, 시중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되며, □□고속의 금리 차익 상당 이익이 총수일가의 지분율만큼 귀속되고, 대여자금으로 핵심 계열사를 인수하여 총수일가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되어 위법함.

○ **사업기회 제공(법 제47조 제1항 제2호)**

- 지원주체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판단기준**

- '제공주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를 기준으로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지분율 요건(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또는

지배력 요건(동일인이 대표이사·임원 50% 이상 선임 등 회사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기준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객체가 아닌 제공주체를 기준으로 판단
- 외부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 검토 내지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 포함

■ 적용제외 기준

-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기회에의 진출이 법적으로 금지(법률적 불능)되거나 재정적 능력이 현저히 악화(경제적 불능)된 경우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사업기회 제공이 이루어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기회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당 사업기회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판단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사업기회의 가치와 사업기회를 수행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 합리적 평가를 거쳐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기회 거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기업집단 전체 차원이 아닌 제공주체 또는 제공주체가 지배하는 회사 기준으로 판단.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판단기준

- ①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②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하고, ③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봄

-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봄

매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 경쟁입찰이 아닌 경우 제외

■ 적용제외 기준

-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은 12% 미만인 경우

‘거래총액’은 문제성 거래규모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매입 및 매출 거래 규모를 포함

‘평균매출액’은 각 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각 연도의 거래총액과 비교

-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적용제외: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 전후방 연방관계, 인적·물적 협업체계 구축 등에 따라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핵심적인 경영정보 접근 가능성 등에 따라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 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 관련 사례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2016제감3225]
[사실관계] 태광의 계열사들은 티시스(총수일가 지분율 100%)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메르뱅(총수일가 100%)으로부터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
[공정위 의견] 김치거래는 우위의 조건인 김치가격을 통해 정상가격 상한 등을 고려 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이며, 와인거래는 임직원 불만제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토 없이 강행되어 합리적 고려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함. 이를 통해 티시스와 메르뱅의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지분구조상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귀속되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됨.

3) 법 위반시 제재조치

○ 지원주체에 대하여

- 시정조치
- 과징금(3 개년 평균 매출액의 10% 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 억원 이내)
- 3 년이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의 벌금

○ 지원객체에 대하여

- 시정조치
- 과징금(3 개년 평균 매출액의 10% 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 억원 이내)

○ 지시관여자에 대하여

- 시정조치
- 벌칙(3 년이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 벌금)

마. 부당한 공동행위

- 공정거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명 '담합'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1) 대상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됨

-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 입찰담합

○ 입찰담합의 유형

- 입찰가격 담합
-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수주물량 등의 결정
- 경영간섭

2) 면책 및 보상제도

○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와 Amnesty Plus 제도

Leniency 제도	담합을 행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자는 과징금이 완전 면제되고, 두번째 자진신고한 자는 과징금이 50% 감경됨
Amnesty Plus 제도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음

○ 신고포상금 제도

-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참가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제3자의 범위: 공동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사업자, 참가사업자의 내부직원이나 퇴직임직원 또는 임직원 등

3) 관련 사례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구매입찰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2013카총2367]
[사실관계] 구 LG전선, 대한전선, 구 진로산업, 구 일진전기, 서울전선 등 5개 사업자 영업담당자들은 2004년 2월 10일 신고리·신월성 1,2호기(2004년 입찰 예정) 및 신고리 3,4호기(2008년 입찰 예정)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결정하고 투찰가격·낙찰가격 등을 합의했음. 또한 5개 사업자 영업담당자들과 극동전선의 영업담당자는 2004년 8월 13일 물량 배분 등 위 기본 합의의 큰 틀 속에 극동전선을 참가시키기로 하면서 신한울 1,2호기(2010년 입찰)의 일부 품목에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결정했음
[공정위 의견] 사업자들이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성립된 합의에 따라 케이블 종류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았고, 사전에 합의하여 품목별로 물량을 배분하여 낙찰자를 협의·결정하고 각 입찰별로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가한 행위는,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제3절 하도급법 실무

가. '하도급법'의 목적과 특성

1) 목적

- **하도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성

- 민법 내지 상법의 특별법

'하도급법'은 강행 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국내법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법인)인 경우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가진 경우에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대상

1) 법 적용 대상

① 원사업자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게 건설,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말합니다.
-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게 제조 위탁을 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합니다.

②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③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 거래

-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하도급거래인 경우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아닌 경우라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리회사가 영위하는 업에 따른 물품 제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소규모 중견기업 포함)에 위탁하는 거래가 하도급거래입니다.
- 수급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우리회사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에 해당됩니다.
- 기술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샘플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에 해당됩니다.
- 외관상 "제조위탁"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탁의 대상이 범용적 성질의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대체물"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단순매매에 해당함).

- 범용성 및 대체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탁과 대체물 제조 간에 “상당하고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강력한 구매력), 수급사업자의 생산계획 수립에 영향 여부, 안정·고정적 거래관계 여부를 고려합니다.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
-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 (임)가공

다.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서면 발급 및 보존(제3조)

- 아래 법정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서면 기재사항

- 위탁일과 위탁의 내용
- 납품 및 인도하는 시가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제공 및 대가의 지급내용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발급대상 서면

단계	발급서면의 종류
거래개시 (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인정 혹은 부인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거래과정 (하도급법 제8조 내지 제16조)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서면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 기재 기술자료 요구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목적,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 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증액 또는 감액) 통지서

- 원 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야 함
- 계약서, 수령증명서, 입찰명세서 등 하도급 관련 서류는 하도급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기술자료제공요구서는 7년간 보관해야 함.

○ 관련 사례

대림산업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2018건하1299]
[사실관계] 대림산업은 2015. 10. 7.부터 2017. 12. 27.까지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및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고 4일~388일이 지난 이후에 발급하였다. 또한 계약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또는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해당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선금금 지급의무(제6조)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제7조)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날(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4)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제9조)

○ 원칙

-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다만, 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
 - 여기서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함. 다만, 검사기준의 객관성 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음.

○ 검사결과와 통지의무

■ 통지기간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목적물 수령일이란 제조 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

■ 통지의무의 예외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됨.

○ 검사비용문제

-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검사와 반품의 관계(대량 납품하는 경우)**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검사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샘플검사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납품 받은 후에 제품에 하자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함.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봄.

○ 관련 사례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014서제2223]**

[사실관계]

피심인(엔에스인터내셔널)은 다운점퍼를 수령한 후 대리점 판매과정에서 오리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반품 및 제품불만이 제기되자 이후 검사기관에 다운점퍼에 대해 깃솜털 투과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A/S를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음.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운점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하였음.

또한 공정위는 목적물 수령 후 물품 관련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피심인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5)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제13조)

○ 원칙

-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 기준일이 됨. 여기서 목적물의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함.

- 60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의 예외

일괄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봄. 즉,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봄.

계약해지로 정산이 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목적물 인수일은 정산시점에 불구하고 계약해지일로 봄.

○ 기간의 계산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 지연이자 지급의무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15.5%)를 지급해야 함. 예를 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하도급법 제13조의3)[시행일 2023. 1. 12.]

-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사례

대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018건하1299]
[사실관계] 대림산업은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건설공사’ 관련 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물문화관 설비공사’ 등 5건의 건설위탁을 한 후 2017. 12. 12. 목적물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대림산업은 2015. 6. 16. 부터 2018. 5. 31. 까지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어음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대림산업)이 목적물 등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법정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7항에 위반됨.

(주)포스코아이씨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019건하1524]
[사실관계] 포스코ICT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씨씨에스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브라질CSP 제철소 관련 전자기기, 배전반 등을 제조위탁하고 2015년 11월 14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또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휴먼에어텍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2013년 9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8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공정위 판단]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포스코ICT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됨.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도 하도급법 제13조 제9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6)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제15조)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제16조)

○ 원칙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해당 하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음.
-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8)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제16조의2)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 위탁을 받은 후 ①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또는 ②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또는 ③ 목적물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 공급원가 외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됨.
- 구체적인 조정 대금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조정신청일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① 협의 중단의사를 밝힌 경우, ② 조정금액이 상호 간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 ③ 합의 지연 시 영업활동의 심각한 곤란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 조합의 공급원가조정협의

-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조합도 원사업자에게 조정신청 협의 가능함.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협의를 임하였다면 그 결과 수급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라.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 대상행위

-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전가
-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한
-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
-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
-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

○ 위법성 판단기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 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 관련 사례

대림산업(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2016서건2713]
[사실관계] 대림산업(주)는 2014. 3. 18. 하남현장(2공구) 관련 토공사 등의 건설위탁을 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1)임시 야적장 확보에 따르는 제반비용 및 인·허가 수속 및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2)시공에 관련된 인·허가 수속 및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3)발주처 및 원사업자가 요청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4)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야간작업, 조기 작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견적단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조건, (5)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장비투입 및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6)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시험시공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7)지급자재의 하차비용 및 현장 내 관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8)각종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견적에 포함되도록 한 계약조건
[공정위 의견] 부당특약은 실제 실현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제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성능 검사 등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시험 검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의 계약조건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여 동법 제3조의4에 위반됨.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제4조)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① 부당하게 ② 목적물 등과 동정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받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3배 배상제에 해당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위 처분에 더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책임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대상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취급
-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 사용
-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책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 책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 책정

○ 위법성 판단기준

-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단,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되며, 신규 개발품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 등의 제조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라고 봄.

○ 관련 사례

지에스건설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 [2018서건0678]
[사실관계] 지에스건설(주)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 기간 동안 하남 및 대전 공사 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법 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 직접 공사비 항목(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결정함.
[공정위 의견] 지에스건설(주)는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한 수급사업자로부터만 공사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의계약에 해당한다. 이 때,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위반됨.

3)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제11조)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법합니다.
- 하도급대금을 감액 시 ① 감액사유와 기준, ②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③ 감액금액, ④ 공제 등 감액방법, ⑤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공정위가 보급하는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표준서식을 사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대상 행위

- 소급단가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거나 원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납품시점에 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감액의 정당성 판단기준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그러나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됨.

4)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금지(제8조)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의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대상행위

■ 부당한 위탁 취소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위탁 취소 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 취소로 인해 수급 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함.

■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됨. 여기서 위탁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에는 다음 세가지를 포함함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당초에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수령 후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 부당한 수령 거부

납기일 이후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성립요건(심사지침)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 등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 발생, 영업취소, 영업정지 처분,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조 등의 착수 거부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원사업자가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인지는 위탁취소가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 후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함.

○ 관련 사례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2018기감3446]
[사실관계]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함
[공정위 의견] 삼성중공업은 위탁 변경 시스템(이하 PCR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취소 및 변경 등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될 손실 등의 절차는 없었으며 PCR 시스템에는 위탁 취소 및 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협력사들은 이유도 모른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됨.

5) 부당반품 금지(제10조)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유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반품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

○ 관련 사례

인타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09하개1116]
[사실관계] 인타스는 사출물을 두 차례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날부터 2~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함. 안타스 직원의 실수로 과잉 발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반품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과잉발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출물을 납품받은 후 검사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음.
[공정위 의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였으므로 법 제10조에 위반됨.

6)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제12조의3)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기술자료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술자료 요청 서면

- 기술자료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서면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또한 해당 서면은 하도급거래의 종료일로부터 7년간 보관해야 함.
-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기술자료의 범위에는 작업공정도,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 등 제조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 특허권, 실용신안권, 설계도면, 생산원가내역서, 매출정보 등이 포함됨.
- 기술자료 요청을 통해 수령한 기술자료는 최초 요청한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단순 유출행위도 기술 유용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음.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함.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위반 시 배상
-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7)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제5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됩니다.

8)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제12조)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회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대상 행위

-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회사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9)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2조의2)

-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회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0)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제17조)

-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11)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제18조)

-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인사에 간섭하거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등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아래의 행위는 법률에 따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봅니다.

○ 대상 행위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 제한 또는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약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ID·PW 등 접속정보

○ 정당한 경영상 정보 요구행위 예시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예: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지급 또는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금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양산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관련사례

웅진코웨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2008하개2356]
[사실관계] 웅진코웨이㈜는 대유전자(주)등 21개 1차 수급사업자에게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부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이들 수급사업자들의 2차 수급사업자와 직접 재하도급 단가를 결정한 후 동 단가대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1차 수급사업자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함.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재하도급 거래 시 단가, 물량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단가결정에 직접 개입함. 이는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이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임을 감안할 때 1차 수급사업자의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납품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인정되며, 피심인이 제품의 품질유지,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의 이유로 1차 수급사업자와 2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 조건에 개입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18조에 위반됨.

12)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래에 정리한 행위 중 하나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대상 행위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13) 탈법행위의 금지(제20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발주자의 의무사항

1)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하도급법 제14조

-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반드시 3자 간에 동시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인, 순차적인 직접 지급 합의도 유효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함
-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됨
-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함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함

○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범위

-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함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함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

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 조문내용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 및 용역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2) 적용 대상

① 법 적용 대상회사: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

SK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므로 우리 회사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특수관계인 관련성: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 '특수관계인을 위하여'란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하지는 않으나, 제 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열회사 발행 유가증권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한 경우도 내부거래에 해당됩니다.

○ 특수관계인

- 해당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
- 동일인관련자
-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및 그 임원
- 계열회사(국외 계열회사와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에서 제외됨)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함

-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계열회사의 임원 등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③ 적용대상 거래

○ 거래유형

- **[자금거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서의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포함.

- **[유가증권거래]**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예) 계열사 A가 발행한 주식, 채권을 비계열사로부터 계열사 B가 매입하는 경우, 계열사 B는 계열사 A를 위한 거래(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에 해당함.

- **[자산거래]**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서의 자산은 자금, 유가증권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함

- **[상품·용역거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위하여 혹은 상대방으로 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상적 거래

모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까지만 "상법상 자회사"개념으로 봄.

상품·용역거래 시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기업집단(포스코, 케이티, 농협, 에스-오일 등)에 소속된 회사는 적용되지 않음.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 용역거래로 봄.

○ 거래상대방과 기준금액

거래성격	거래상대방 ^{주1)}	거래금액 ^{주2)}
자금, 유가증권, 자산	특수관계인	50억원 이상 또는

	(예) 국내계열회사, 동일인의 친족 등)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쪽의 5% 이상 ^{주3)}
상품 또는 용역 (손익계산서상 매출에 계상)	동일인 측 20% 이상 출자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50% 초과 소유한 상법상의 자회사 등 ^{주4)}	분기별 합계액(매출, 매입 합산)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쪽의 5%이상

주1) 거래상대방에 해외계열회사는 유예 중, 비영리법인·단체는 포함

주2) 금액산정시 부가세 불포함

주3)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 기준이며, 새로 설립된 회사일 경우 '납입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봄

주4) SK그룹의 경우 ① SK㈜, SK디스커버리(이상 동일인 및 그 친족이 20% 이상 지분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② 위 ①회사가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③ 위 ①회사 및 위 ② 회사 또는 위 ② 회사가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가 적용대상 거래 상대방에 해당

○ 적용 대상거래의 판단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함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회피하고자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 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 건의 거래행위로 간주
- 동일 거래상대방과 같은 날 약관에 의한 여러 건의 기업어음거래가 동일 조건(발행일, 기간만료일, 이자율 등)으로 거래되는 경우 하나의 차입행위로 보아 기업어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시의무 여부 판단
- 계약서상 자동 연장 조항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 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함
- 거래상대방인 복수의 회사가 공시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각 회사별로 개별 공시해야 함.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쪽의 5% 이상일 경우, 50 억원 미만이라도 공시 대상이 됨.
자본금이 적은 회사의 경우 공시 대상 검토에 특히 주의가 필요함

○ 대규모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

-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 거래 시 대규모 내부거래 해당 여부

구분	발행시장	유통시장			
거래회사	O	장내거래	장외거래		
		X (거래조건을 정할 수 없는 행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매입/매도)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	
			O	매입	매도
				O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X
발행회사	O	X			

④ 거래금액의 산정

- 거래금액이 50 억원 이상이거나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인 때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함

○ 산정방법

-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
- 부동산 임대차: 연간임대료 + 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 X 이자율)

관리비는 제외함.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적용됨(매년 개정)

- 담보제공: 담보한도액
- 상품·용역거래: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

부가가치세는 제외. 기업회계기준으로 하되,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거래로 봄.

⑤ 공시시기, 내용 및 절차

○ 공시시기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1 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고, 상자회사가 아니거나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 일 이내에 각각 공시해야 함.
- 위에 따라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등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 공시내용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등은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거래에 한정한다),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함.
- 공시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함.

○ 공시절차

-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산망을 통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함.

⑥ 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의한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신고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⑦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 이사회 의결 절차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야함.

○ 주요내용의 변경

- 내부거래 공시 대상 회사는 이미 공시한 사항 중 다음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
 -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단, 상호변경, 영업양수, 합병 등으로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결은 제외함.
 - 거래금액, 거래조건(단가, 약정이자율 등)이 당초 보다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계약기간 변경 등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거래 취소 시에는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사후 공시하면 됨.

⑧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공정거래법 제 29 조, 시행령 제 36 조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처분 및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해야함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란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인 거래

○ 대상 행위

-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 및 처분

공익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행위(주식수, 거래금액과는 관계없음)

- 자금, 자산,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내부거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를 위하여 자금, 자산,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자신의 순자산총계·기본 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 억원 이상인 거래

나.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1) 조문내용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 주요내용 요약

구분	내용	공시 기준	공시기한
소유지배구조 관련 중요사항의 변동	최대주주의 주식변동사항	1%이상변동	주식인수일로부터 7일내 ^{주)}
	임원의 변동사항	발생시	등기한 분기종료 후 2월내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비유동자산 취득·처분결정	자산총액 10%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시로부터 7일 내 ^{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및 처분결정	자기자본 5%	
	증여, 수증	자기자본 1%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결정	자기자본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결정	5%	
	증자·감자 결정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결정시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영업양수/양도, 합병, 분할, 주식교환, 해산	결정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시로부터 7일 내 ^{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등 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 개시, 중단 또는 해제결정		

※ 주) 7일 이내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7일째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 기간계산은 사유발생일부터 하되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함

2) 공시대상 회사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비상장회사로 ① 직접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 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②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 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함)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 금융·보험사는 비상장회사 공시제도의 적용을 제외함
- 연도 중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 또는 제외된 경우, 공시의무 발생 여부는 계열 편입·제외 통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연도 중에 지정 제외된 기업집단은 지정 제외된 날부터 공시의무가 해제됨.

3)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①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현황

○ 요약

공시항목	공시기준일	공시기준	공시기한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	지분변동일	1%이상변동	주식인수일로부터 7일내
임원의 변동	등기부상 등재일	변동내용 (신임/해임 등)	등기한 분기종료후 2월내

○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

-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 최대주주: 해당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함)
 -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 주식보유 변동사항
 - 해당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합병, 신주발행, 주식매각 등 변동 사유는 불문하나,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시의무는 없음.
- 최대주주가 다수인 경우 각각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100 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동일인,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등기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 및 자기 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적시해야 함.
- 동일인 측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동일인 측 최대주주(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주식수나 지분을 합계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구성원 간 주식의 비율이 100 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공시(동일인 측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인 측 보유주식비율에 변동이 있더라도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공시의무는 없음).
- 공시사유 발생일 즉, 지분변동일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름
 -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주권을 교부 받은 날(주식대금을 지급한 날, 해당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날)
 - 신주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 회사지분 양수하는 경우: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감사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확정되는 날

○ 임원의 구성현황 및 변동

- 매 분기 동안 임원이 변동(등기일 기준)된 내역 전체를 공시하되,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2·5·8·11 월 말일까지) 공시.
- ※ [예시] '18. 10. 1. 임원 변동(등기)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등기한 날) 종료 후 2 개월 이내 공시해야 하므로 4/4 분기 종료 후 2 월 말일까지 공시해야 함.
- 임원이 중임하는 것은 공시대상이 아니며,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해야 함.
- ※ [예시] 사내이사 ⇒ 감사, 사내이사 ⇒ 대표이사

②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요약

공시항목	공시기준일	공시기준	공시기한
비유동자산의 취득/처분	이사회(대표이사)의 결정일	자산총액의 10% (납입자본금의 10% ^{주1)})	결정일로부터 7일 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처분		자기자본의 5% ^{주2)}	
증여 또는 수증		자기자본의 1%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채무보증		자기자본의 5%	
채무인수/ 타인에 의한 당사채무면제		자기자본의 5%	
증자 또는 감자		결정 여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결정 여부	

※ 주 1) 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주 2)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자기자본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 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적용(12 월 결산법인: 금년 4.1. ~ 다음해 3. 31.)

○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결정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계약 건 별(이사회/대표이사 결정 건 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비유동자산은 회계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항목이 포함됨(건설중인 자산, 투자자산 등).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처분 결정

-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타법인(국내·국외 계열회사 제외) 발행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사항이 있을 때 공시.

※ 취득하기로 한 타법인 주식 전부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결정 당시 주식 등 발행법인이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시 대상에 해당함.

○ 증여 또는 수증 결정

- 자기자본의 100 분의 1 이상의 증여 또는 수증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함.

○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결정

-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공정거래법 제 10 조의 2 에서 말하는 채무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채무보증인 사항은 모두 포함함.
따라서 해외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담보제공일 경우에도 공시대상임

- 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함

○ 채무인수 결정/타인에 의한 당사의 채무면제

-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혹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증자 또는 감자

- 증자 또는 감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기준금액이 없으므로 해당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시사유가 됨.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국내 또는 해외전환사채나 국내 또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모든 사채가 아니며, 추후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사채에 한정됨.

③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요약

공시항목	공시기준일	공시기준	공시기한
영업의 양도/양수	이사회(대표이사)의 결정일	결정여부	결정일로부터 7일내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회사합병·분할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관리절차의 개시 중단 등			

○ 영업양도/양수 결정

- 상법 제 374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상법 제 374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주식교환·이전 결정

- 상법 제 360 조의 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 360 조의 15 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

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우리회사도 해당)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해야 함
- 분기 1회 공시 원칙이나 일부항목의 경우에는 연1회 공시

○ 주요내용 요약

구분	내용	공시 기준	공시일정
일반현황	회사개요(회사명, 대표, 영위업종, 종업원 수 등)	지정일 ^{주)}	연1회
	재무현황(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현황(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지정일	
	해외계열회사 현황	지정일	
	계열회사 변동내역	전년도 지정일 ~금년도 지정일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임원현황	지정일	연1회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주총 관련제도 등 운영현황	전년도지정일 ~금년도지정일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의 주식소유 현황	지정일	분기1회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현황	공사기한일 직전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분기말	분기1회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	연1회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거래 현황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간 부동산 임대차거래 현황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지정일 직전 분기개시일부터 종료일	분기1회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지정일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	연1회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기타자산거래 현황	지정일 직전 분기개시일부터 종료일	분기1회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현황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연1회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기한일 직전 분기말	분기1회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종료일	연1회
계열회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지정일	연1회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기한일 직전 분기말	분기1회
지주회사 현황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현황	지정일	연1회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	기한일 직전 분기말	분기1회

※ 주) 당해연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 통상 5월 1일